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4. 17.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10일
- 다. 상정일자 : 제8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2. 4. 1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김 영 남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1. 7. 24 법률 제6490호) 및 동법시행령(2001. 11. 22 대통령령 제17412호)이 개정·시행되면서 그간 시·도지사 사무로 되어있어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하여 권한 위임되어 자치구가 처리하여 오던 옥외광고물 등의 사무가 자치구 사무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미관의 향상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세계수준의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허가·신고사항의 관리 및 옥외광고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연립 간판의 경우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새로이 정함. (안 제2조, 제3조)
-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심

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 상 위 법령에서 실시토록 정하고 있는 당해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6조)

○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광고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시간의 범위 등 시행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교육의 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도 검사의 수수료 금액의 산정·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 아울러 동 수수료의 면제대상 및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1조)

○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며, 광고물 등의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14조)

○ 도시경관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로 권한 위임되어 처리해 오던 옥외광고물 등의 사무가 2001. 7. 2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2001. 11. 22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자치구 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2002. 2. 8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서울특별시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

례 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구 실정에 맞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주요제정내용>

○ 동 조례안은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배열되었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과 연립간판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등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산정·부과기준 등과 수수료 면제대상 및 그 범위를 규정하였고,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와 세부기준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거된 광고물 등의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5조에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특별구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수준 있는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

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과 나목 및 아목의 규정은 일상생활 간판으로서 서울시 표준안보다 다소 완화하여 본 조례안에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규정된 서울시장이 지정한 특별구역의 광고물 등에 대한 특별정비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조 및 융자에 필요한 자금은 사전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예산조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업주 또는 건물주가 신청하는가?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업주의 신청 및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허가기간이 지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업소의 자격은?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비영리법인은 어느 곳이 있나?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한국광고사협회가 있음.

○ 질의요지(윤한호 위원) : 옥외광고물 설치시 보험가입은?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규정 없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전광판설치 허가 및 관리는?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허가는 주민자치과 관리는 문화체육과로 이원화되어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2.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1. 7. 24 법률 제6490호) 및 동법시행령(2001. 11. 22 대통령령 제17412호)이 개정·시행 되면서 그간 시·도지사 사무로 되어있어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하여 권한위임되어 자치구가 처리하여 오던 옥외광고물등의 사무가 자치구 사무로 변경되어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미관의 향상 및 구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세계수준의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허가·신고사항의 관리 및 옥외광고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연립간판의 경우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새로이 정함.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다.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실시토록 정하고 있는 당해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6조)

라.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광고물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시간의 범위 등 시행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교육의 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안 제10조)

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의 수수료 금액의 산정·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 아울러 동 수수료의 면제대상 및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1조)

사.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을 정하며, 광고물등의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아. 도시경관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3. 근거법령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1. 7. 24 법률 제6490호)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2001. 11. 22 대통령령 제17412호)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2. 3. 15 ~ 2002. 4. 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 ① 구청장은 연립간판(2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게시시설과 옥외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가, 옥외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간판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소위원회위원의 수는 3인이상으로써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⑥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서울특별시조례를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 가. 표시면적 25제곱미터이상의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입체형간판은 제외한다)
- 나. 세로 8미터이상의 돌출간판
- 다.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 마.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 바. 표시면적 1제곱미터이상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사. 표시면적 5제곱미터이상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중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점멸의 방법을 사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경우와 입체형 문자, 도형으로 표시하는 네온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⑤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매년 12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11조(수수료) ①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중 산업체 구인벽보,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 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설치하거나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④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설치하거나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5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반환)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특별구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 연 5퍼센트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위원회에서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보조 또는 용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재정 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9조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 4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등) •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 전에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옥외광고물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표시에 관한 사항 3시간 면제
행정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법에 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 교육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옥외광고업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가로형·세로형간판 가. 일반 간판(가로형·세로형 간판) 나. 건물 측·후면 4층이상의 판류형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m'	6제곱미터이하	4,000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
	개	m'	5제곱미터이하	5,000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0,000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40,000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2. 돌출간판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		1제곱미터이하	10,000
	개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이하	20,000
	개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30,000
	m'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00
	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함)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기타변경 나. 내용변경	개		해당 광고물(벽면·지주)제 준함	5,000
4.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이하	50,000
	개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100,000
	개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200,000
	m'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5. 지주이용간판	개		1제곱미터이하	5,000
	개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이하	10,000
	개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0,000
	m'		1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의	2,000
	m'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광고물의 종류	구 분	단위	기 준	수 수 료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개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옥상간판에 준함	20,000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 m' 개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개이하 20개초과 매20매까지 가산	3,000 1,000 15,000 10,000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개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5,000 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		대 대 m'	1.5제곱미터이하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0 2,000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취광고물		개		20,000
12. 창문이용 광고물		개		20,000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이용 현수막 다. 지정계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		개 m' 개 개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20,000 1,000 2,000 10,000
14. 벽보		매	20매이하 20매초과 50매이하 50매초과 매50매까지 가산	5,000 10,000 10,000
15. 전단		매	매1,000매까지	5,000
16. 연립간판의 게시시설 가. 신규 나. 기간연장, 변경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4분의 1	

광고물의 종류	구 분	단위	기 준	수 수 료
17.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2항)		건		5,000
18.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		건		30,000
19. 기타 광고물 가. 차량탑재 영상광고 나. 공중전화 부스이용 광고 다. 깃발이용 광고 라. 기타종류의 광고물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준함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수수료의 계산방법

-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이하는 절사)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입체형, 입체형문자·도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간판에는 계산된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내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 (4)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규격·위치·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 (6)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이용료·사용료 등은 관계법령 또는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4미터이상의 게시 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22,000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45,000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15,000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2,000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3,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15,000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2,000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1,500
4.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22,000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미터이하	45,000
	연면적 8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2,000
5. 기타 광고물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등에 준함	

※ 수수료의 산정방법

- (1) 광고물등의 연면적에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상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 (3)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2를 준용한다.

[별표4]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분	단위	수수료	관련법규
신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중 관할구역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와 업소명을 변경한 때의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5]

옥외광고물등의 과태료부과 기준(제12조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p>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p> <p>(나)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0.8제곱미터미만</p> <p>(다)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미만</p> <p>(라)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p> <p>(마)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p> <p>(바)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p> <p>(사)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p> <p>(아)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p> <p>(자)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p> <p>(차) 연면적 3.0제곱미터</p> <p>(카) 연면적 3.0제곱미터초과</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p> <p>(나)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0.8제곱미터미만</p> <p>(다)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미만</p> <p>(라)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p> <p>(마)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p> <p>(바)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p> <p>(사)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p> <p>(아)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p> <p>(자)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p> <p>(차) 연면적 3.0제곱미터</p> <p>(카) 연면적 3.0제곱미터초과</p>	<p>8만원</p> <p>13만원</p> <p>19만원</p> <p>25만원</p> <p>30만원</p> <p>39만원</p> <p>45만원</p> <p>60만원</p> <p>79만원</p> <p>80만원</p> <p>79만원 + 3제곱미터초과면적 0.5제곱미터당 10만원가산</p> <p>5만원</p> <p>7만원</p> <p>9만원</p> <p>15만원</p> <p>20만원</p> <p>29만원</p> <p>35만원</p> <p>40만원</p> <p>49만원</p> <p>50만원</p> <p>49만원 + 3제곱미터초과면적 0.5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p>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p>나. 현수막</p> <p>(1) 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p> <p>(가) 면적 1.0제곱미터미만</p> <p>(나) 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p> <p>(다) 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p> <p>(라) 면적 3.0제곱미터이상 3.7제곱미터미만</p> <p>(마) 면적 3.7제곱미터이상 4.4제곱미터미만</p> <p>(바) 면적 4.4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p> <p>(사) 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p> <p>(아) 면적 6.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p> <p>(자) 면적 8.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p> <p>(차) 면적 10.0제곱미터</p> <p>(카) 면적 10.0제곱미터초과</p> <p>(2) (1)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p>	<p>5만원</p> <p>7만원</p> <p>9만원</p> <p>13만원</p> <p>15만원</p> <p>19만원</p> <p>25만원</p> <p>35만원</p> <p>45만원</p> <p>50만원</p> <p>45만원+1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p> <p>해당 과태료 금액의 2배적용</p>
<p>다. 벽 보</p> <p>(1) 일반 광고내용</p> <p>(가) 1 ~ 10장</p> <p>(나) 11 ~ 20장</p> <p>(다) 21장이상</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p> <p>(가) 1 ~ 10장</p> <p>(나) 11 ~ 20장</p> <p>(다) 21장이상</p>	<p>장당 1만원</p> <p>장당 1만5천원</p> <p>장당 2만5천원</p> <p>장당 1만5천원</p> <p>장당 2만원</p> <p>장당 3만원</p>
<p>라. 전 단</p> <p>(1) 일반 광고내용</p> <p>(가) 1 ~ 10장</p> <p>(나) 11 ~ 20장</p> <p>(다) 21장이상</p>	<p>장당 5천원</p> <p>장당 1만원</p> <p>장당 1만5천원</p>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 (가) 1 ~ 10장 (나) 11 ~ 20장 (다) 21장이상	장당 1만5천원 장당 2만원 장당 3만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이상 위반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3> 과태료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별표6]

옥외광고물등의 이행강제금부과 기준(제13조 관련)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1. 가로형·세로형·공연간판	
가. 면적 2.0제곱미터미만	20만원
나. 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0만원
다. 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라. 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5만원
마. 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55만원
바. 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사. 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아. 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자. 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차. 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카. 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타. 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45만원
파. 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65만원
하. 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85만원
거. 면적 20.0제곱미터	200만원
너. 면적 20.0제곱미터초과	199만원 + 20.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20만원
나.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0만원
다.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라.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9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55만원
바.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사.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아.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자.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차.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카.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타. 연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파.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하. 연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거. 연면적 20.0제곱미터	200만원
너. 연면적 20.0제곱미터초과	199만원+2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30만원
나.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35만원
다.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4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48만원
마.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3.5제곱미터미만	55만원
바. 연면적 3.5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65만원
사.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4.5제곱미터미만	80만원
아. 면적 4.5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95만원
자.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차.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카.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타.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파.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하. 연면적 10.0제곱미터	200만원
거. 연면적 10.0제곱미터초과	199만원+1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형 가로형 간판	
가.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30만원
나.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5만원
다.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라.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9만원
바.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55만원
사.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아.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자.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차.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카.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파.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하. 연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거.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너. 연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25.0제곱미터미만	210만원
러. 연면적 2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	230만원
머.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35.0제곱미터미만	245만원
버. 연면적 35.5제곱미터미만 40.0제곱미터미만	260만원
서.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 45.0제곱미터미만	280만원
어. 연면적 45.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	290만원
저. 연면적 50.0제곱미터	300만원
처. 연면적 50.0제곱미터초과	299만원 + 5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아취광고물	
(가)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40만원
(나)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50만원
(다)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60만원
(라)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70만원
(마)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70만원 + 20.0 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100만원 이하)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애드벌룬(공) 1개	40만원
(나)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다) 애드벌룬(공) 3개이상	80만원 + 3개초과 1개당 5만원 가산 (100만원 이하)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가)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40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나)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50만원
(다)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60만원
(라)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70만원
(마)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80만원 + 2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나. 교통안내소	5만원 가산(100만원 이하)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	일반 가로형 간판에 준함
라.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공시설물	차주이용간판에 준함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가)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25만원
(나)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30만원
(다)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15.0제곱미터미만	35만원
(라)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36만원 + 15.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5만원 가산(50만원 미만)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유사한 광고물의 유형에 준함
가. 비행선	
(1) 무인비행선	
(가)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250만원 + 1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2) 유인비행선	10만원 가산
(가)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200만원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200만원 + 1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나. 그밖의 교통수단	10만원 가산
(1)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	10만원
(2)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20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3)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29만원
(4)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35만원
(5)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5만원
(6) 연면적 5.0제곱미터	50만원
(7)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49만원 + 5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4> 이행강제금 금액의 계산
방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 리 자			⑱ 비고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업소명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옥외광고업신고번호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표시위치	⑫ 표시기간	⑬ 광고내용	⑭ 준공일자	⑮ 성명	⑯ 주소	⑰ 전화번호		⑱ 변경사항

364mm × 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업 신고(변경)대장

① 신고 번호	② 신고 년월일	③ 업소명	대표자			⑦ 영업장 소재지	⑧ 영업 내용	⑨ 종업 원수	⑩ 변경 사항	⑪ 비고
			④ 성명	⑤ 주 민 등록번호	⑥ 주 소					

353mm × 250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신고번호	
⑦ 재교부신청 사 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의 교육수료증			
① 교육의 종류			
② 교육년월일		③ 교육시간	시간
수 료 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 번 호	
	⑥ 소 속 업체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또는 교육위탁 실시 기관의 장)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의 교육이수 대장

① 연번	② 교육의 종류	③ 교 육 년월일	④ 교 육 시 간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⑦ 업체명	⑧ 비 고

190mm × 268mm 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물등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서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법인)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
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 신청인(기관·단체)의 소개서(보유시설·장비·인력 등 포함)	수수료
	없음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등의 교육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법인)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
 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반환청구서

청 구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광고물 종류			⑤ 수 량	
⑥ 규격 및 형태			⑦ 표시내용	

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광고물 종류			⑤ 수 량	
⑥ 규격 및 형태			⑦ 표시내용	
⑧매각한 광고물등의 매각금액			원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하